

규정 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

관련 조항: ACA, ACH, ACH-RA, GKA-RA
책임 맡은 사무실: 수석 행정 책임관(Chief Operating Officer)

평등한 고용기회(Equal Employment Opportunity)

I. 목적

공평한 고용기회 관련 법에 대한 위반 혐의를 받는 사건의 절차를 세우기 위한 규정입니다.

II. 행정절차

- A.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의 chief operating officer 와 associate superintendent of the Office of Employee Engagement and Labor Relations(OEELR)의 associate superintendent 는 Montgomery County Board Policy ACA, *Nondiscrimination, Equity, and Cultural Proficiency* 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실제 또는 예상하는 개인적 특성을 포함한 어떠한 기준이나 근거로 인한 차별이 없는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강화할 책임이 있습니다.
- B. 고용 차별 신고는 MCPS Form 430-42, *Administrative Complaint* 를 OEELR 에 제출합니다. 불만 및 이의제기는 MCPS Regulation GCA-RA, *행정적 이의제기(Administrative Complaint)*에서 제공하는 행정적 이의제기에 따릅니다.
- C. OEELR 를 통해 공평한 고용기회(Equal Employment Opportunity (EEO) 불만/이의제기를 추구하는 것은 금지된 사항이 아니며 고용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. EEO 에의 이의제기는 EEO Commission, Baltimore District Office 로 직접 제출합니다.

U.S.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
Baltimore Field Office
City Crescent Building
10 S. Howard Street, Third Floor
Baltimore, MD 21201
1-800-669-4000, 1-800-669-6820 (TTY)

- D. 모든 교육구 고용인은 고용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허락된 (예를 들면, 행정적 이의제기, 고충토로, 옴부즈맨이나 EEO 이의제기 절차) 모든 방법을 모색할 권리가 있으며 이의제기로 인하여 불링, 괴롭힘, 위협이나 보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.

모든 고용분야에서의 차별 금지 관련 자료:

Equal Pay Act of 1963, as amended; Civil Rights Act of 1866, 1871, and 1991;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, as amended;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;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, as amended; Equal Protection Clause of the 14th Amendment; Rehabilitation Act of 1973, Section 504; Uniform Services Employment and Reemployment Rights Act of 1994;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;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

규정 변경사: 이전 규정번호 460-5, 1979년 7월 27일, (디렉터리 정보 갱신); 2006년 3월 6일 갱신, 2017년 7월 24일 실질적 갱신.